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1가합511374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

담당변호사 김상훈

피고 1. 주식회사 A

2. B

3. 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21. 7. 8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,326,486원 및 그중 646,531,284원에 대하여 2020. 11. 11.부터 2021. 3. 15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[별지1]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. 9. 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0. 9. 8. 접수 제4213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2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재판장판사한성수

판사백소영

판사임현수

별지